#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신영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542

발의연월일: 2022. 1. 25.

발 의 자:신영대·김병욱·김성주

김병기 · 정태호 · 전재수

이병훈 · 강훈식 · 위성곤

김수흥 · 이원택 의원

(119]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주민의 직접참여 보장과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·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됨.

그런데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·폐지 청구권 및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법률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조례청구 절차, 그 밖에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여, 효율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3항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 제목 "(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)"을 "(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및 주민조례청구 홍보)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 절차, 그 밖에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) ①	제3조(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및
·② (생 략)	<u>주민조례청구 홍보)</u> ①·② (현
	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③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조례청
	구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유도
	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 절
	차, 그 밖에 주민조례청구제도
	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
	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.